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923호 2015년 2월 27일(금)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2

공 고

- 폐기(신조)공인 등록사항 공고..... 5
○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9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속초시 고시 제2015-5호(2015.2.16.)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2. 27.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조서: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실음생략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㉔	동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동명동 512-12번지 일원	—	증)22,928	22,92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㉔	속초시 동명동 512-12번지 일원	22,928	• 공동주택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지구 단위계획구역 결정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928	—	22,928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2,928	—	22,928	100.0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총괄 조서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합계	2	251	1,146	—	—	—	—	—	—	2	251	1,146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169	631	—	—	—	—	—	—	1	169	631
소로	1	82	515	—	—	—	—	—	—	1	82	515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	12	보조 간선 도로	1,458	동명 560-3도 중로1-2	영랑 591-11잡 중로1-2	일반 도로		1987.2.17 (강고제87-제12호)	
변경	중로	3	2	12 ~ 16	보조 간선 도로	1,458 (169)	동명 560-3도 중로1-2	영랑 591-11잡 중로1-2	일반 도로			()는 구역내
신설	소로	3	329	6	국지 도로	82	동명 512-37대 중로3-2	동명 512-115잡 근린공원5	일반 도로			
폐지	소로	3	42	6	국지 도로	97	동명 512-78전 중로3-2	동명 산70-1임 5호 공원	일반 도로		1977.4.19 (강고 제77-72호)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2	중로3-2	폭원변경 (12m → 12~16m)	• 공동주택단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	소로3-329	신설	• 중앙근린공원의 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3-42	—	폐지	• 공동주택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대체도로 신설계획에 따라 계획 도로 폐지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1,723	—	21,723	—
가구번호와 동일	BL1	21,723	속초시 동명동 512-12번지 일원	21,723	공동주택용지

라.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	BL1	용 도	•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 제8호의 부대시설 및 제9호의 복리시설
		건 폐 율	• 20% 이하
		용 적 륜	• 270.80% 이하
		높 이	• 29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속초시 건축조례에 따름

공 고

「속초시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 제③항 및 제4조의3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속초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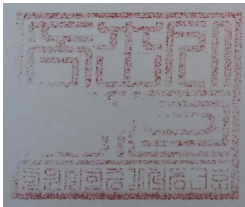
2015년 2월 27일

속 초 시 장

1. 공인 신조 및 폐기 사유

— 인증기 교체

2. 신조 공인명 및 인영 : 2개 (신조 1개, 폐기 1개)

구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최초사용/폐기 년월일	인증기계기번호
신조	속초시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3호 (차량등록담당)		훈민정음체 가로(3.0cm)× 세로(3.0cm)	2015. 02. 27.	F21501071
폐기	속초시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3호 (차량등록담당)		한글전서체 가로(3.0cm)× 세로(3.0cm)	2003.05.26 (2015. 02. 27.)	F23005529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이 2012. 9. 22.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개정된 기준에 맞게 개정하자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표준 금액 미만의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징수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나. 현행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수수료
- 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사무 목록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시민은 2015. 3.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1) 개정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전화: 033-639-2249(2720), FAX: 033-639-2385)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전화: 033-639-22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증명 등 수수료(제4조 관련)

	항목	기준	수 수 료 (원)	비고
증명, 확인	1. (계약·납품) 실적 증명	1건	무료	
	2. 공장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2)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	1건	2,000	
	3)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	1,000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 증명	1통	무료	
	2) 지방세 과세(세목별) 증명	1통	800	
	4. 건축물에 관한 증명			
	1) 건축물대장 등·초본	1건	500	
	- 현황 도면 추가	1면	100	
	2) 건축물대장 열람	1건	300	
	5. 부동산에 관한 증명(확인)			
	1) 토지이용계획확인	1필지	1,000	
	- 컬러 발급의 경우	1필지	1,500	
	2) 개별공시지가 확인	1필지	800	
	3) 개별주택가격 확인	1주택	800	
	4) 공동주택가격 확인	1주택	800	
	6. 어업에 관한 증명			
	1) 어업권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2) 어선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7. 그 밖의 제 증명			
	1)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건	1,000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면허 등록 지정 등	1. 일반 행정 분야			
	1) 공유재산 대부 신청			
	- 신규	1건	5,000	
	- 갱신 또는 기간 연장	1건	3,000	
	2. 문화 · 체육 분야			
	2) 게임제작업 등록	1건	20,000	
	3) 게임배급업 등록	1건	20,000	
	4)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건	30,000	
	5)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6)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건	20,000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	
	9)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 · 등록 · 신고 사항 변경	1건	5,000	
	10) 공연장 등록	1건	10,000	
	11)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	
	12) 영화업 신고	1건	20,000	
	13)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14)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2,500	
	15)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17)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18)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1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	
	20) 비디오물제작업 · 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2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	
	2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23)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2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25)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2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1건	2,500	
	27)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28)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29) 출판사 신고			
	- 신규	1건	10,000	
	- 변경	1건	5,000	
3. 관광 분야				
	1) 종합유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70,000	
	2) 일반유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1건	50,000	
	3) 종합유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40,000	
	4) 일반유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20,000	
	5) 기타 유시설업 신고	1건	30,000	
	6) 기타 유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7) 유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4. 부동산 분야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	
	4)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6)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등록인장변경수수료)	1건	800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5. 산업 · 경제 분야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	
	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4)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항공유판 매업 · 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	
	7)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8)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	
	6. 농업 · 건설 분야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3) 소하천 점용 · 사용 허가	1건	1,000	
	4)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5) 소하천 점용 · 사용 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	
	6)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7. 환경 분야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8. 교통 분야			
	1)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1건	6,000	
	9. 보건 의료 분야			
	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건	15,000	
	3)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5,000	
	4)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	1건	15,000	
	5)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	1건	15,000	
	6)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1건	60,000	
	7)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30,000	
	8)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60,000	
	9)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30,000	
	10. 해양 수산 분야			
	1)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	3,700	
	2)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	
	3)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4)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5)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500	
	6)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1건	5,000	
	7)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4,500	
	8)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1건	1,000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9)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 면허 신청	1건	7,300	
	10)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 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1건	1,000	
	11)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1건	1,000	
	12)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900	
	13)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1건	6,000	
	14)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1건	3,700	
	15)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1건	4,500	
	16)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	
	17)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18)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1건	1,000	
	19)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1건	1,000	
	20) 「수산업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어업재개 신고	1건	1,000	
	21)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	
	22)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23)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1건	3,700	
	2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1건	6,700	
	2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6,000	
	26)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1건	6,000	
	27)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1건	2,200	
	28)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1건	1,000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29)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 시어업 허가연장	1건	1,000	
	30)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 험어업 신청	1건	1,000	
	31)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1건	2,000	
	32)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 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2,200	
	33)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 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2,000	
	34)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 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	
	35)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 · 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1,000	
	36)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 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	
	37)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 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1,000	
	38)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 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39)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4,500	
	40)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1건	4,500	
	41)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 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1,600	
	42)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 어 재결신청	1건	4,500	
	43)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 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2,300	
	44)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6,700	
	45)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 에 따른 유해어업 사용허가 신청	1건	4,500	
	46)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 른 수산자원 포획 · 채취금지의 해제허 가 신청	1건	4,500	
	47)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 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500	

	항목	기준	수수료(원)	비고
	48)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1건	3,000	
	49)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건	1,500	
	50)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 가 신청	1건	3,000	
	51)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 가 신청	1건	1,500	
	52)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 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 · 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 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 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	
	53)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	
	54)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 국적증서영역서 발급	1건	1,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② (생략)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등록·신청·신고 등 그 밖의 제증명 등에 <u>대하여는</u> 수 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 ----- ----- -- <u>대해서는</u> -----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수 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u>대하여는</u> 별표 3의 고무인 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 ----- <u>대</u> <u>해서</u>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체

□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주소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2. 27.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15. 02. 27 ~ 2015. 03. 13.(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 : 2015. 02. 23.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	이철남	
	주소 (대장상주소)	속초시 조양동 1410-5번지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120번지
		건축물 현황	1층 시멘트벽돌조/스레이트 주택 21.6㎡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기타 사항

-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디자인과(☎033-639-2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